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042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가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5. 체결한 증여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다만 원고는 가액배상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에 대한 연 5%의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 적 21층 호 54.06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2730.1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730.1분의 15.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제)

-이상-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C에 대한 금전채권 (피보전채권)

받았습니다.

2. 사해행위

가. 소외 C와 피고간의 법률행위

원고가 소외 C에게 판결문상의 금원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소외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푼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소외인이 임의변제하기를 기다렸으나, 최근에 우연히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C의 처인 피고 B에 대하여 2021년 3월 5일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21년 3월 5일 접수 제11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사해행위에 관하여

위 부동산이 소외 C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무자력상태에 이르게 되는점, 소외인은 원고의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고려하여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것을 고려한다면, 소외인은 무자력 상황임을 감안하여 위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동안 임의변제를 수차 독촉한점, 그리고 소외인과 피고가 부부인점을 고려한다면, 위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채무자는 법상 악의의 수익자(대법원판례 90 다 16279)로 추정받기에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간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가액배상의 청구 및 범위

가. 사해행위 후 변제등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상당액의 배상을 구할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조합의 채권최고액 5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21. 3. 26.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2020년 8월 기준 금 110,000,000원이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5,200,000원입니다. 위 부동산 가액 110,000,000원에서 55,200,000원을 공제한 금 54,800,000원중 금 50,000,000원이 가액배상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 마. 그렇다면 피고는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소를 청구합니다.

